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2-46호

『대전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5일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대전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조례안 예고

1. 제정이유

시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나. 시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다. 인권정책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라.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마. 대전광역시 인권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사.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3. 의견제출

가.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 행정자치전문 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02-789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행정자치전문위원실(전화 042-270-5124,
FAX 042-270-5029, E-mail : sjulee2000@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제정 조례안 : 붙임

대전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시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이 시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등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작은도서관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민·관 협력방안
4. 사업추진을 위한 자원조달 방안
5. 그 밖의 작은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자치구청장 및 작은도서관 운영주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조성 및 설치비
2. 시설개선에 필요한 경비
3. 자료구입비 등 운영비
4. 그 밖에 시장이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시 도서관, 독서시설 및 독서문화 혜택이 미비한 자치구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해 지역사회내 다른 공공도서관(「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도서자료 및 업무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른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에 도서 및 자료 등의 공동이용 등 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민간 후원활동의 장려) 시장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민간의 후원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조성·운영 및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기업 등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생략>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장 작은도서관의 육성 및 지원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의 기능 활성화와 도서관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다른 공공도서관(「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작은도서관 간의 도서관자료 및 업무 등의 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에 도서 및 자료 등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강

구하여야 한다.

제8조 ~ 제9조 <생략>

제10조(작은도서관에 대한 후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업·단체 또는 개인의 후원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기업 등의 후원을 진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 제15조 <생략>

부칙 <제11316호, 2012.2.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조(다른 공공도서관과의 협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다른 공공도서관(「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 제5조 <생략>

부칙 <제24041호, 2012.8.13>

이 영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도서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사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시설은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나. ~ 바. <생략>

5. ~ 11. <생략>